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주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870 발의연월일: 2020. 11. 30.

발 의 자:이주환·서병수·김정재

김예지・박대출・金炳旭

김기현 · 김용판 · 지성호

최승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제21조제4항에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위판장개설자에게 위판장 평가 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한 명령과 권고를할 수 있고, 제26조제2항제12호에서는 이 같은 명령과 권고를 따르지아니하였을 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권고의 법적 성격이 당사자의 자발적 이행에 의존하여 그이행을 강제할 수 없음에도, 권고를 따르지 않음을 이유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업무 정지 사유로 규정된 권고를 삭제하여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(안 제26조제2항제12호).

법률 제 호

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2항제12호 중 "명령이나 권고를"을 "명령을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허가 등의 취소 등) ①	제26조(허가 등의 취소 등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위판장	②
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	
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	
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	
지를 명할 수 있다.	
1. ~ 11. (생 략)	1. ~ 11. (현행과 같음)
12. 제21조제4항에 따른 <u>명령이</u>	12 <u>명령을</u>
<u>나 권고를</u> 따르지 아니하였을	
때	
13. (생 략)	13. (현행과 같음)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